

의안번호	2216698
의 퇴 인	조은희의원
회 답 일	2026.4.30.
추 계 번호	26C08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u>개선</u>, 복지 증진 및 <u>지위 향상 방안</u> 4. 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2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규모 및 <u>인력수급</u>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3	안 제35조의6 (적정 인건비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을 목표로 지역별 고령화 등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수급 관리와 공급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공립·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2	안 제6조의2 (실태조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35조의6 (적정 인건비 기준)	

2. 상세 사유

□ 실태조사(안 제6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에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 조사 방법과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가 항목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현시점에 예상하기 어려움
 -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8억 2,000만원을 배정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적정 인건비 기준(안 제35조의6)

- 현행법 제38조제6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1조의2제1항¹⁾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재가급여의 제공기관마다 인건비 지출비율을 48.6%에서 87.0%까지 차등하여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국고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²⁾
 -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가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지출이 증가할 경우, 해당 지출 확대분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³⁾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⁴⁾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출 확대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를 국가의 추가재정 소요로 볼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 장기요양요원의 보수 인상 여부와 임금 가산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함

1)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2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6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9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87.0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2

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3)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후략)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nabo.go.kr